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85,068,241	29,552,047
일반회계	804,753,513	24,142,605
특별회계	180,314,728	5,409,442
공기업특별회계	155,198,280	4,655,948
상수도사업	59,469,354	1,784,081
하수도사업	95,728,926	2,871,868
기타특별회계	25,116,448	753,493
주택사업 특별회계	3,245,130	97,354
교통사업 특별회계	13,492,874	404,786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920,159	27,60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97,490	29,925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005,024	90,151
폐기물유발부담금 특별회계	43,089	1,293
대지보상 특별회계	2,215,328	66,460
기반시설 특별회계	289,585	8,688
수질개선 특별회계	907,769	27,23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변경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03,45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차입한도는 55,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